

강의 2주차

[테마01] 등록사항	대장			도면		경계점 좌표등록부
	토지(임야)대장	공유지연명부	대지권등록부	지적도	임야도	
소재·지번	○	○	○	○	○	○
고유번호	○	○	○			○
지목	○			○	○	
소유자	○	○	○			
소유권의 지분		○	○			
면적, 이동사유 개별공시지가	○					
대지권비율, 건물명칭			○			
부호(도), 좌표						○
색인도, 도곽선경계, 지적기준점, 건축물·구조물				○	○	

[테마02] 면적의 결정방법

1/500, 1/600 축척지역
※ 최소면적 단위 → 0.1㎡

123.441㎡ ⇒ 123.(4)㎡

123.451㎡ ⇒ 123.(5)㎡

123.35㎡ ⇒ 123.(4)㎡

123.45㎡ ⇒ 123.(4)㎡

[테마03] 면적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

- ① (합병)
- ② (지목변경)
- ③ 지적공부의 (재작성)
- ④ 면적의 (환산)

[테마04] 면적측정방법

지역	경계점 좌표등록부	면적측정 방법
1/1200 지역 (평판)측량	×	전자면적(측정기)
1/500, 1/600지역 (경위의)측량	○	좌표면적(계산법)

[테마05] 지적공부의 복구

-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(지체 없이)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.
- ② 지적측량수행(계획)서, 지적측량(의뢰)서, 지적측량준비도, 개별공시지가자료 등은 사용할 수 없다

[테마06] 부동산종합공부

- ① 토지 표시와 (소유자), 건축물 표시와 (소유자), 토지의 이용 및 (규제), 부동산의 (가격),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.
- ②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(통지)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[테마07] 신규등록의 소유권증명서면

- ① 법원의 확정(판결)서
- ② (준공)검사확인증 사본
- ③ (기획재정부)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

[테마08] 등록전환지역의 면적결정 방법

허용범위를 (초과)하는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하고, 임야대장의 면적 등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.

[테마09] 합병의 제한

- ① 저당권·가압류·가처분·경매개시결정 등기
- ② (요)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
- ③ 원인·연월일·접수번호가 (다른) 저당권등기
- ④ 등기사항이 (다른) 신탁등기

강의 3주차

[테마01]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사유

- ① 지적(측량)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
- ② 토지이동(정리)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
- ③ 지적공부의 (재)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
- ④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
- ⑤ 면적환산이 잘못된 경우
- ⑥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(면적)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
- ⑦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(초과)하는 경우
- ⑧ 지적위원회의 (의결서) 내용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

[테마02] 토지소유자의 신청정정

토지의 표시정정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등록사항 정정 (측량)성과도 ② 인접 토지소유자의 (승낙서)
소유자의 표시정정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등기된 토지 - (등기)완료통지서, (등기)사항증명서 (등기신청접수증×) ② 미등기 토지 - (가족)관계 증명서

[테마03] 축척변경 절차

동의	토지소유자 3분의 (2)이상의 동의
의결	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
승인	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(승인)
공고	(20)일 이상 공고
경계 표시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30)일 이내 경계점표지를 설치 ② (지번별) 조서 작성
청산금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15)일 이상 공고 ② (20)일 이내 납부고지, 수령통지 ③ (6)개월 이내에 청산금 납부 ④ (6)개월 이내에 청산금 지급 ③ (1)개월 이내에 이의신청

[테마04] 사업시행자의 토지이동 신청 및 신고

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·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(15)일 이내에 (지적소관청)에 신고하여야 한다.

[테마05] 통지기간

변경등기가 필요없는 경우	지적공부에 등록된 날부터 (7)일 이내
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	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(15)일 이내

[테마06] 지적측량 기간

- ①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(5)일로 하며, 측량검사기간은 (4)일로 한다.
- ②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(4)일을,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(4)점마다 (1)일을 가산한다.
- ③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의 4분의 (3)은 측량기간으로, 전체 기간의 4분의 (1)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.

[테마07]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 절차

- ①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·도지사는 (30)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지적위원회는 (60)일 이내에 심의·의결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(30)일 이내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(7)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의결서를 받은 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(90)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[테마08] 중앙지적위원회

- ① 중앙지적위원회는 5명 이상 (10)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(과반수)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, (과반수)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(5)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